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증빙서류 미비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○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,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○과는 직원 격려를 위한 명절선물 구매 비용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세부내역서, 집행 대상자·수량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 등을 누락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